

- 또한, 각 시·도별로 외국어 학원 시설기준을 보면, 최소 60㎡에서 최대 150㎡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전국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유독 서울시만 과도한 시설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. 따라서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권고대로 현행 330㎡에서 150㎡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등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 - 그밖에 조례 제명의 개정이나 자동차운전 관련규정의 개정 등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 5. 토론요지 : 없음
 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 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 안 [별표1]의 “국제실무”의 “강의실·실습실·열람실”란 중 “100㎡ 이상”을 “150㎡ 이상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○안건별 심사결과

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“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”을 “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학원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”을 “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법 제15조제1항”을 “법 제14조의2제1항, 법 제1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교습중지 명령 등)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중지 명령은 서면으로 한다.

【별표 1】 학원의 시설규모 중 국제실무분야, 외국어계열, 어학교습과정 「강의실·실습실·열람실」란의 “330㎡ 이상”을 “150㎡ 이상”으로 하고, 비교란 중 “생활편의시설”을 “제2종 근린생활시설”로 한다.

【별표 2】 <2-1. 자동차 운전>의 “교습과정”란과 “시설·설비 및 교구”란의 내용을 삭제한다.

【별표 3】 <2-1. 자동차 운전>의 “교습과정”란과 “일시수용능력인원” 및 “비교”란의 내용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자 : 서울특별시청
- 의결(처리건수) : 8건(원안동의 8건)

의안번호	제출일자	회부일자	상정내역	심사결과
894	2001. 6. 9	2001. 6.11	제20회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(2001. 6.26) 제12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(2001. 9. 7)	보류 원안동의 (조건부)
895	2001. 6. 9	2001. 6.11	제20회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(2001. 6.26) 제128회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(2001. 9. 7)	보류 원안동의